

# 宣城金氏族譜 所載 高麗末 帳籍의 復原

윤 상 기\*

< 목 차 >	
I. 들어가면서	2. 帳籍
II. 이론적 배경	IV. 원형의 유추
1. 호적	V. 金輶의 戶籍과 宣城金氏族譜의 관계
2. 추심호	VI. 나오면서
III. 자료의 현존상태	
1. 宣城金氏族譜	

## I. 들어가면서

족보는 일찍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소위 '帝系'라 하여 왕실의 계통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帝王年表라 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족보는 漢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賢良科'라는 벼슬에 추천되는 방편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개인의 내력과 조상의 경력을 기록하여 그 家系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족보의 시초라고 전한다.<sup>1)</sup>

한국에서의 족보는 고려시대에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대체로 고려 중엽 이후로서 金寬毅의 「王代實錄」,<sup>2)</sup> 任景肅의 「璿源錄」이 그 효시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왕실의 친척인 宗子和 宗女까지 기입되어 족보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었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相臣錄」·「功臣錄」 등이 정비되어 그들의 시조나 父子 관계를 일부분이나마 알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1) 한국인의족보 편찬위원회 편, 「가승보」, 서울, 中央教育資料開發院, 1991, pp. 157-158.

2) 韓國氏族史研究會 編, 「族譜便覽」, 서울, 靑化, 1989, p. 7.

게 되었다.

한국에서 同性同本の 혈족 전부를 체계적으로 망라한 족보가 등장하기는 1400년대에 들어와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본격적인 족보의 효시로는 「安東權氏族譜」(成化丙申譜)와 「文化柳氏族譜」(嘉靖譜)를 꼽는다. 전자는 1476년에 간행되었는데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중간본만 전해진다. 그리고 후자는 1562년에 간행되었는데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외손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후일에 여러 족보를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되기도 했다.<sup>3)</sup> 이들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는 1423년에 간행된 「文化柳氏族譜」(永樂譜)가 있으나 서문만 전할 뿐 현존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sup>4)</sup>

그런데 족보에는 여러 가지 관련자료들이 부록으로 곧잘 수록된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려말의 帳籍과 같이 시기적으로 오래된 호적관계 자료들은 원본의 전래는 극히 드물고 그 내용만 족보류에 수록되어 전하는 것이 다수 있다.

고려시대에 관한 자료들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매우 드물어 역사를 연구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기록들이라도 발굴해내서 소중하게 분석, 연구하여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사연구란 결국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아 있는 이러한 작은 조각들을 끼워 맞추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宣城金氏族譜들에는 ‘洪武二十三年庚午 帳籍’(이하 ‘帳籍’이라 줄여 부른다.)이라는 제목으로 禮安金氏 金輅, 金方軾, 金成世 및 金希寶의 4인의 호구단자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호구단자들은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는 고려시대에 관계되는 자료이다. 그래서 이 자

3) 한국인의족보 편찬위원회 편, 앞에 든 책, p. 158.

4) 韓國民族史研究會 編, 앞에 든 책, 같은 쪽.

료를 검토해본 결과 비록 전체적인 윤곽은 호구단자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일반적인 호구단자의 형식을 벗어난 부분이 많음을 발견하고, 朝鮮太祖 戶籍原本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호적 자료들과 비교해보니, 본래의 형식에서 변형하여 목적에 필요한 형식, 즉 호구단자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비록 단편적이고 사소한 기록이지만 이것을 분석, 연구해보면 역사적으로는 고려사회의 일면을, 서지학의 측면에서는 고려시대의 호적<sup>5)</sup>이라는 고문서의 형식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우선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변형되기 이전의 원래의 형식으로 복원시키는 것과 복원된 자료와 宣城金氏族譜들의 관계를 밝히는데 한정하고, 복원된 자료에 대한 社會史的인 접근 등 다른 측면에서의 분석은 후속연구로 미루어 두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호적

“戶籍이란 戶口成籍의 준말로 생각된다. 戶口란 家戶와 家口の 合成語이며, 家口란 家長을 중심으로 하나의 건물, 또는 이를 중심으로 부속건물에서 살며 경제적·생활단위를 형성한 자연적인 인간집단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戶口는 혈연을 같이 한 최소의 인간집단인 가족과 일치하는 경우도 많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sup>6)</sup>

5) 호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호구단자들이 추심호를 포함한 金銘의 戶籍에서 변형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들은 뒤에서 밝히겠다.

6) 許典植, 「高麗社會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p. 2.

형태에 따라 호적의 명칭도 달라진다. 우선 낱장으로 되어 있는 단자와 이러한 단자들을 모아 장적의 형태로 만든 장적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것들은 각각 호구단자와 호구장적이라 부를 수 있는데, 호구단자는 戶別 신분증명서와 같은 것이고, 호구장적은 관청의 호적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sup>7)</sup> 호구장적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각 호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 차례씩 제출하는 것이 호구단자이다. 일반적으로 각 호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면, 관청에서는 이것들을 모아서 장적을 작성하고, 호구단자는 수령의 手決로 확인된 다음 몇 가지의 형식적 확인을 거쳐서 개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와는 달리 장적에서 대조하여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개인에게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의 호구단자는 준호구단자 또는 줄여서 준호구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호적들도 위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호구의 파악은 통치상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작업이었다. 호구를 파악하는 작업은 오늘날에는 물론 고대 또는 중세에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그 단편이 남아 있어서 당시의 통치상태가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호적은 사회계층과 직접 관련되므로 사회구조나 사회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社會史에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는 것이다.<sup>8)</sup>

호적은 통치에 있어서 기본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그 효용도 매우 광범위하였으리라 쉽게 추측된다. 따라서 호구를 증가시키는 작업은 地方官의 政績에 중요한 평가대상이 되어 있었다. 호적을 파악하였다는 것은 바로 대상 지역에 통치권이 작용함을 의미하며, 田籍이 田稅의 바탕이 되었다면 호적

7) 같은 책, p. 5.

8) 같은 책, p. 1.

은 徵兵·調役의 기본자료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호적은 신분질서의 혼란을 막음으로써 신분사회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 크게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徵兵·調役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또한 호적을 바탕으로 특수한 호적이 제작성되어 특수한 용도에 간편하게 이용되고 있었다.<sup>9)</sup>

이러한 호구의 成籍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3년마다 成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호적이 만들어진 때는 西涼 建初 12(416)년이고,<sup>10)</sup> 唐에서는 3년마다 호적을 改修하여 縣·州·戶部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고 한다.<sup>11)</sup> 한국에서도 戶部가 六典禮制의 일부로서 호적을 관장하는 주된 임무를 담당하기는 고려시대부터이지만, 이보다 앞선 통일신라시대에도 촌락의 실태를 3년마다 총괄하였으며, 그 중 西原京內 村에 대한 총괄표<sup>12)</sup>가 전해져 와 3년마다 성적하는 방법을 짐작케 할 뿐만 아니라 호적작성의 기원이 매우 오래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sup>13)</sup>

고려시대에 실제로 호적이 어느 정도 자주 작성되었는지 자세히 적은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호적에 대한 일반 法制를 개관한 「高麗史」의 食貨志 戶口條에 의하면, 수록된 고려말의 上訴 가운데서 兩班戶籍은 3년마다 한 번씩 작성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14)</sup> 恭愍王 20(1371)년에 홍건적의 침입 후에 문란해진 호구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式年戶口法の 엄수를 下敎한 기록도 있다.<sup>15)</sup> 그리고 같은 책의 刑法志 職制에 의하면 僧籍

9) 같은 책, pp. 10-11.

10) 仁井田陞, 「唐宋法律文書の研究」, 東方文化學院, 1937, 15章 戶籍에 西涼 建初 12(416)년의 호적이 관목되어 있다. 許興植, 앞에 든 책, pp. 1-2에서 재인용.

11) 「光山金氏烏川古文書」,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pp. 12-13.

12) 野村忠夫, 「正倉院より発見された新羅の民政文書について」, 「史學雜誌」, Vol.62, No. 4, (1953). 許興植, 앞에 든 책, p. 2에서 재인용.

13) 같은 책, 같은 쪽.

14) 「高麗史」, 卷 79, 食貨 2, 戶口.

15) 같은 책, 같은 條.

도 3년마다 考閱되었다고 한다.<sup>16)</sup> 따라서 대체로 모든 호적이 3년마다 증감과 변화를 기록하여 재작성된 것은 조선시대와 다름없었다고 생각된다.<sup>17)</sup>

고려시대의 호적으로서 현존하는 호적은 호구단자나 장적을 막론하고 모두 고려후기인 13세기 이후의 것 뿐이고 고려전기의 것은 호구단자조차 남은 것이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대의 호적 자료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고려시대의 호적 자료

번호	명칭	작성년도	전거
1	驪州李氏 丁酉年 准戶口	1237	「驪州李氏小陵公派譜」, 1745년판.
2	驪州李氏 庚午年 准戶口	1270	「驪州李氏小陵公派譜」, 1745년판.
3	咸昌金氏 庚辰年 准戶口	1280	「咸昌金氏族譜」, 1934년판.
4	光山金氏 金璉 准戶口	1301	後代 寫本: 「光山金氏世系」, 筆寫本.
5	驪州李氏 癸酉年 准戶口	1333	「驪州李氏小陵公派譜」, 1745년판.
6	光山金氏 金積 戶口單子	1333-1347	後代 寫本: 「光山金氏世系」, 筆寫本.
7	咸昌金氏 丙子年 准戶口	1336	「咸昌金氏族譜」, 1934년판.
8	驪州李氏 壬子年 准戶口	1372	「驪州李氏小陵公派譜」, 1745년판.
9	密陽朴氏 壬子年 准戶口	1372	「密陽朴氏漢城公派譜」, 1938년판.
10	潘南朴氏 癸丑年 准戶口	1373	「潘南朴氏世譜」, 1825년판.
11	密陽朴氏 壬子年 准戶口	1377	「密陽朴氏漢城公派譜」, 1938년판.
12	柳芳雨 戶口單子(斷片)	1384	後代 寫本(「豊山柳氏族譜草本」, 表紙裏面)
13	金洙 戶口單子(斷片)	1390	後代 寫本
14	宣城金氏 庚午年 帳籍	1390	「宣城金氏族譜」, 重刊譜(1745년판); 「宣城金氏世譜」, 三刊譜(1804년판); 「宣城金氏世譜」, 四刊譜(1855년판); 「禮安金氏大同譜」, 五刊譜(1973년판).
15	安東金氏 金得雨 戶口單子	1391	「安東金氏世譜」, 1833년판.
16	朝鮮太祖 戶籍原本	1391-1392	原本(國寶 131號)
17	裴尙恭 戶口單子	高麗	後代 寫本(「豊山柳氏族譜草本」, 表紙裏面)

16) 같은 책, 卷 84, 刑法 1, 職制. “... 三年一度 考閱僧籍.”

17) 許興植, 앞에 든 책, p. 5.

이상과 같이 호적은 통치상의 기초적인 작업으로 고려시대에 계속하여 작성되었고 「高麗史」나 기타 史籍에 현존하는 단편적인 기록, 또는 현존하는 사례는 당시의 호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중 극히 적은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호적을 통하여 당시의 통치수준이나 법제적인 형태를 이해하는 기왕의 연구성과를 재확인·재검토하는 작업에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민중들이 어떠한 가족·친족·신분·거주 등의 사회구조를 이루면서 살아왔는가를 규명하고 관심을 가지는 데에 새로운 측면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호적은 史書에서 찾을 수 없고 단편적인 사례를 찾아서 종합해야 될 것이다.

## 2. 추심호

良人戶籍 가운데에는 기본구조 이외에 사망한 다수의 친족을 포함하고 있는 추심호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의 복잡한 호적이 있다. 추심호라는 명칭은 世系를 추심하였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朝鮮太祖 戶籍原本의 둘째 폭에서 호적작성의 지침을 밝히면서 ‘推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18)</sup>

추심호는 개인의 신분을 간단히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널리 쓰였던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예는 과거에 응시하는 자가 試券에 적어서 제출한 것을 들 수 있다.<sup>19)</sup> 호적에 있어서는, 朝鮮太祖 戶籍原本에서는 둘째 폭의 事目에 따라 참고호적이 없는 경우 양반계층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지만, 光山金氏 金稹 戶口單子와 「海州崔氏大同譜」에 실린 조선초의 沃溝郡夫人宋氏 戶籍에서는 선대의 功으로 門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sup>20)</sup> 그러나 이 복잡한 世系推尋은 일반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

18) 朝鮮太祖 戶籍原本, 2쪽 6행. “... 兩班矣世系 置推尋難便 爲齊微弱兩班 ...”

19) 許典植, 앞의 든 책, p. 57.

20) 같은 책, p. 121.

고, 朝鮮太祖 戶籍原本의 둘째 쪽의 지침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신분을 확인하려는 한 가지 방법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친족의 범위와 유대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sup>21)</sup>

고려시대의 추심호가 나오는 자료들을 <표 1>에서 찾아 나열해보면, 6, 9, 11, 13, 14, 15 및 16 중 6쪽 1호에 실린 金得守의 호적, 同 2호에 실린 李元의 호적, 7쪽 1호에 실린 金氏의 호적 및 同 2호에 실린 吳氏의 호적들이 있다.

추심호는 자식에 관한 기록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데, 일반적인 추심의 종류와 그 기록 순서는 호주의 조의 처(조모), 증조, 증조의 처(증조모), 외조, 외조의 처(외조모), 妻父(장인), 처외조 및 처외조의 처(처외조모)에 대한 추심의 순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호주의 玄祖(고조)와 玄祖의 처(고조모)에 관한 추심도 덧붙여졌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IV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추심의 기록사항은 夫系의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 父, 조, 증조, 모 및 외조에 관한 사항을, 妻系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父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 또는 父, 부, 조, 증조, 모 및 외조에 관한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妻系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夫系의 경우와 같으나, 본인의 父 즉 妻父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어서 나오는 호칭도 모두 妻父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한 代씩 더 높아진다. 즉 妻父를 기준으로 할 때의 父, 조, 증조, 모 및 외조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조, 증조, 고조, 조모 및 父의 외조가 되는 것이다. 朝鮮太祖 戶籍原本상의 추심호에는 妻系의 기록이 모두 11회 나타나는데, 그 중 처를 기준으로 한 경우가 7회이고 妻父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4회로서 처를 기준으로 한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21) 같은 책, p. 57.



### III. 자료의 현존상태

#### 1. 宣城金氏族譜

먼저 본 연구에 이용된 帳籍을 수록한 宣城金氏族譜들의 목록을 정밀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初刊譜는 실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목록에서 제외  
하였다.

#### 宣城金氏族譜

金行秋(1679-1758年) 等編. 木板. 乙丑(1745年), 重刊.

3卷, 別譜 合 3冊. 四周單邊, 半廓 26.8×19.0cm. 6段. 12行, 小字雙行. 上  
下內向2葉花紋魚尾(單線, 單絲). 32.8×21.6cm. 線裝(五針眼).

版心題: 金氏譜.

刊記: 乙丑(1744年)季夏順興後洞齋舍開刊.

序: 宣城金氏族譜舊序…乙丑(1685年)…金兌一(1637-1702年)謹序.

序: 族譜重刊序…崇禎後再甲子(1744年)…(金)履萬(1683-1758年)謹序. …乙  
丑(1745年)…(金)行秋(1679-1758年)謹識.

卷首: 字標. 贈嘉善大夫戶曹參判行左右衛保勝郎將金公墓碣. 有明朝鮮國宣  
務郎永柔縣令金公墓碣. 皇明朝鮮國資憲大夫吏曹判書贈諡文節公金先  
生神道碑銘. 贈通訓大夫禮院左通禮成均生員金公墓碣. 洪武二十三年  
庚午(1390年)帳籍. 凡例.

卷末: 宣城金氏別譜. [有司帙].

#### 宣城金氏世譜

金時鍊(1741-1818年) 等編. 木板, 木活字版 混版. 甲子(1804年), 三刊.

5卷 5冊。四周雙邊，半廓 26.1×18.4cm。6段。12行，小字雙行。上下內向2葉花紋魚尾(單線，單絲)。31.9×21.8cm。線裝(五針眼)。

刊記：甲子(1804年)季秋開刊乙丑(1805年)仲春印布。

序：宣城金氏族譜舊序…乙丑(1685年)…金兌一(1637-1702年)謹序。

序：族譜重刊序…崇禎後再甲子(1744年)…(金)履萬(1683-1758年)謹序。…乙丑(1745年)…(金)行秋(1679-1758年)謹識。

序：族譜三刊序…癸亥(1803年)…(金)象鍊(1731-1804年)謹序。

卷首：贈嘉善大夫戶曹參判行左右衛保勝郎將金公墓碣。有明朝鮮國宣務郎永柔縣令金公墓碣。皇明朝鮮國資憲大夫吏曹判書贈諡文節公金先生神道碑銘。贈通訓大夫禮院左通禮成均生員金公墓碣。洪武二十三年庚午(1390年)帳籍。凡例。贈資憲大夫兵曹判書行宣務郎永柔縣令金公墓碣銘<并序>。白雲池傳疑碑識。凡例。

#### 宣城金氏世譜

金樂崇(1796- 年)等編。木板，木活字版 混版。乙卯(1855年)，四刊。

7卷 7冊。四周雙邊，半廓 26.1×18.4cm。6段。12行，小字雙行。上下內向2葉花紋魚尾(單線，單絲)。36.0×23.7cm。線裝(五針眼)。

序：宣城金氏族譜舊序…乙丑(1685年)…金兌一(1637-1702年)謹序。

序：族譜重刊序…崇禎後再甲子(1744年)…(金)履萬(1683-1758年)謹序。…乙丑(1745年)…(金)行秋(1679-1758年)謹識。

序：族譜三刊序…癸亥(1803年)…(金)象鍊(1731-1804年)謹序。

序：宣城金氏族譜四刊序…乙卯(1855年)…(金)輝鍾(1788- 年)序。…乙卯(1855年)…(金)樂崇(1796- 年)謹識。

附錄(卷之四(黃字卷)末)：洪武二十三年庚午(1390年)帳籍。贈嘉善大夫戶曹參判行左右衛保勝郎將金公墓碣。有明朝鮮國宣務郎永柔縣令金公墓碣。

皇明朝鮮國資憲大夫吏曹判書贈諡文節公金先生神道碑銘. 贈通訓大夫禮院左通禮成均生員金公墓碣. 贈資憲大夫兵曹判書行宣務郎永柔縣令金公墓碣銘<并序>. 白雲池傳疑碑識. 凡例.

### 禮安金氏大同譜

金昌鎮 編. 鉛活字版. 忠北, 1973年, 五刊.

上下卷 2冊. 26.6cm. 洋裝.

序: 宣城金氏族譜舊序…乙丑(1685年)…金兌一(1637-1702年)謹序.

序: 族譜重刊序…崇禎後再甲子(1744年)…(金)履萬(1683-1758年)謹序. …乙丑(1745年)…(金)行秋(1679-1758年)謹識.

序: 族譜三刊序…癸亥(1803年)…(金)象鍊(1731-1804年)謹序.

序: 族譜四刊序…乙卯(1855年)…(金)輝鍾(1788- 年)序. …乙卯(1855年)…(金)樂崇(1796- 年)謹識.

序: 大同譜五刊序…檀紀四千參百六年 癸丑(1973年)…(金)源謹 序.

附錄(卷首): 洪武二十三年庚午(1390年)帳籍. 白雲池傳疑碑識. 贈嘉善大夫戶曹參判行左右衛保勝郎將金公墓碣. 贈資憲大夫兵曹判書行宣務郎永柔縣令金公墓碣銘<并序>. 皇明朝鮮國資憲大夫吏曹判書 贈諡文節公金先生神道碑銘. 贈通訓大夫禮院左通禮成均生員金公墓碣. 凡例.

錄附[附錄](卷首): 五刊大同譜凡例.

卷首: 行列圖.

識: …檀紀四千參百六年癸丑(1973年)…(金)鉉基謹識.

1685년에 金宗瀛<sup>22)</sup>과 金兌一<sup>23)</sup> 등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2권 2책으로 집

22) ① 「宣城金氏族譜」, 重刊譜, 卷之二, 張 58, 宗瀛. “肅廟甲子公始修族譜.”

② 같은 책, 卷之一, 卷首, 宣城金氏族譜舊序, 張 2 左. “… 族兄宗瀛氏 銳意襄成閔累年 而始斷手總若干卷 …”

③ 같은 책, 卷之一, 卷首, 族譜重刊序, 張 2 右. “… 蓋行秋之大父處士公 實始修纂譜

작되는<sup>24)</sup> 『宣城金氏族譜』,<sup>25)</sup> 初刊譜(이하 '初刊譜'로 줄여 부른다.)에도 帳籍이 실려있음이 분명하나 자료를 찾지 못하여 위의 목록상에서는 표시하지 못했다.

서명에 本貫으로 표시된 宣城은 禮安의 옛 이름이다. 禮安은 慶尙北道 安東郡에 속해 있는 지명으로 동북부에 있으며, 安東市에서 3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면이다. 禮安面은 본래 고구려 시대에는 買谷縣이었는데 신라 때 景德王이 善谷으로 명칭을 바꾸어 奈靈郡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太祖 때에는 城主 李能宣이 귀순하였으므로 禮安이라 개칭하고 郡으로 승격하였다. 고려 顯宗 9(1018)년에는 安東의 古名인 吉州에 속하였다가<sup>26)</sup> 忠烈王朝(1275-1309년)에 한 때 宣城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本貫을 宣城이라 한 것도 이 때의 지명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지금은 禮安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7)</sup> 고려 말기 禔王 때(1375-1388年)는 郡으로 독립되고 이어 州로 되었으며, 恭讓王 2(1390)년에는 縣으로 되어 후에 縣監으로 개칭된 監務를 두었다.<sup>28)</sup>

禮安金氏는 고려시대 중기 사람인 金尙을 시조로 하고 左右衛保勝郎將

牒 …” 處士公은 金宗瀛을 가리킴.

- ④ 「宣城金氏世譜」, 四刊譜, 卷之五, 宣城金氏族譜四刊序, 張 1 左. “… 而舊未有譜 崇禎乙丑 我七代祖考處士公 始纂修 …”
- 23) 「宣城金氏族譜」, 重刊譜, 卷之二, 張 70, 兪一. “… 公宰晉陽時始刊族譜 …”
- 24) 初刊譜가 간행된 연도인 1685년과 족보에 수록된 인물들의 출생년도를 대조하면 대체로 2권까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重刊譜부터 四刊譜까지의 편집을 참고하면 한 권이 한 책으로 편집되어 있으므로 2권 2책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宣城金氏의 宗孫인 金濟鶴님의 口述에 의하면 1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실물을 찾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 25) 정확한 서명은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알지 못한다. 다만 重刊譜의 서명이 「宣城金氏族譜」이므로 初刊譜도 「宣城金氏族譜」일 가능성이 높다.
- 26) ① 田溶新 編, 『韓國古地名辭典』,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3, P. 185.  
②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禮安縣. “禮安縣 本高句麗買谷縣 新羅改名善谷 爲奈寧郡 領縣 高麗改爲禮安郡 顯宗戊午屬吉州任內 …”
- 27) 宣城金氏의 宗孫인 金濟鶴님의 口述에 의하면 현재 本貫을 宣城이라 지칭하는 사람의 비율은 대략 40%, 禮安이라 지칭하는 사람의 비율은 대략 60% 정도라고 한다.
- 28) ① 田溶新 編, 앞의 든 책, 같은 쪽.  
②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禮安縣. “… 恭讓王庚午 始置禮安監務 …”

金輅를 中祖로 系代한다.<sup>29)</sup> 金尙의 생존년대는 족보나 帳籍의 어느 쪽에도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연대를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세대간의 터울을 30년으로 보고 있으므로,<sup>30)</sup> 족보와 帳籍를 통하여 출생년도를 밝힐 수 있는 최초의 인물인 金輅가 8대손으로 至正 11년 辛卯(1351년)생이므로, 단순한 숫자상의 계산으로는 1140년대가 金尙의 출생년대가 된다. 이 연도는 고려가 918년부터 1392년까지 존속하였으므로 대충 고려중기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金尙에 관하여 알려진 사실은 그가 禮安에서 살았으며<sup>31)</sup> 戶長을 지냈다는 것<sup>32)</sup> 밖에는 없다.

## 2. 帳籍

「宣城金氏族譜」, 重刊譜(이하 ‘重刊譜’로 줄여 부른다.)에 있는 帳籍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표시 안의 글자는 小字임을 나타낸다.

洪武二十三年庚午 帳籍

前左右衛保勝郎將金輅年四十本禮安辛卯生

父奉善大夫備巡衛精勇護軍 方軾<故>

祖中顯大夫備巡衛大護軍 鈕<故>

曾祖中顯大夫備巡衛大護軍致仕 成世<故>

母永貞郡夫人鄭氏本基州

外祖承奉郎解官祇侯 鄭仁烈<故>

妻德豐郡夫人尹氏年四十三本德豐戊子生

父朝靖郎知安山郡事 仁禧<故>

29) 韓國氏族史研究會 編, 「韓國族譜大典」, 甲篇, 서울, 靑化, 1989, P. 1249.

30) 許興植, 앞에 든 책, p. 231.

31) 「宣城金氏世譜」, 三刊譜, 卷之一, 張 1 左, 金尙.

32) 「宣城金氏族譜」, 重刊譜, 卷之一, 張 1 左, 金尙.

祖中正大夫監察執義 奕瞻<故>

曾祖承奉郎通禮門祇候 周彥<故>

外祖徵仕郎都染署令鄭需<故>

與威衛保勝中郎將金方軾

夫大護軍 鈕

祖大護軍致仕 成世

曾祖戶長 希寶

外祖散員同正金琬改名承祐本三陟

大護軍致仕金成世<古名公淑>

父戶長 希寶

祖戶長中尹 敦富

曾祖戶長 存誠

外祖圓丘壇直權得鈞 本福州

妻父及第權萬紀<古名洪壽>

父神騎都領 允和

祖副戶長 時中

曾祖副戶長 端正

外祖別將同正金得剛本同州

戶長金希寶

父戶長中尹 敦富

祖戶長 存誠

曾祖戶長 尚

外祖戶長趙元本甫城

妻父圓丘壇直權得鈞

父閣門祇候 允平

祖郎將 存富

曾祖副戶長 淑清

外祖殿中內給事同正文昌修本福城<sup>33)</sup>

먼저 이 帳籍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족보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원본이 아니고, 둘째 書頭에 '洪武二十三年庚午 帳籍'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390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호구장적이 원본이 되며, 셋째 金輅의 단자에서만 나이가 나타나고, 金方賦, 金成世 및 金希寶의 단자에서는 나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과 宣城金氏族譜들에 金輅의 자식 代인 9代부터 父母同生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金輅의 戶籍이 원본이었을 것이고, 넷째 기록내용으로 보아 추심호가 포함된 호적을 변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帳籍은 호구단자의 형식으로 변형되어 있는데 형식상 잘못된 부분이 두 군데 있다. 첫째는 처의 호구단자에는 모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외조의 기록 마지막에 本 표시를 해야 하는데 빠트렸다. 둘째는 金成世의 호구단자에서 외조의 성명 표시와 本 표시 사이에 한 자 띄어져 있는데 이것은 붙여 기록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宣城金氏世譜」, 四刊譜<sup>34)</sup>(이하 '四刊譜'로 줄여 부른다.)와 「禮安金氏大同譜」, 五刊譜<sup>35)</sup>(이하 '五刊譜'로 줄여 부른다.)를 편찬할 때는 수정하여 붙여 놓았다.

帳籍의 마지막 줄에 "戶長, 大護軍, 中郎將, 三世의 帳籍은 舊譜에 年條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지금은 알 수가 없다"<sup>36)</sup>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帳籍은 初刊譜에서부터 실렸던 것임과, 初刊譜에서도 金希寶, 金成世,

33) 같은 책, 卷之一, 卷首, 張 6-7.

34) 「宣城金氏世譜」, 四刊譜, 卷之四, 附錄, 洪武二十三年庚午 帳籍, 張 1 右.

35) 「禮安金氏大同譜」, 五刊譜, 卷之上, 卷首, 洪武二十三年庚午 帳籍, p. 11.

36) 「宣城金氏族譜」, 重刊譜, 卷之一, 卷首, 洪武二十三年庚午 帳籍, 張 6 左. "戶長 大護軍 中郎將 三世帳籍 舊譜不書年條 今不可考." 여기에서 戶長은 金希寶, 大護軍은 金成世, 中郎將은 金方賦를 가르킨다.

金方軾의 나이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원형의 유추

이 帳籍은 추심호가 포함되어 있는 金輅의 戶籍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金輅의 戶籍을 추정복원하여 이 帳籍과 비교해 보면서 帳籍에 기록된 내용들을 金輅의 戶籍에서 다 찾을 수 있는지와 帳籍上에 남아있는 추심호의 특징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金輅의 戶籍이 족보를 간행할 때 참조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帳籍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족보상에는 나타나는 내용이 복원된 金輅의 戶籍에서 발견되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고려시대에서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호적제도도 文宗時에 완성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戶籍의 경우 고려후기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文宗時까지 완성되었을 典型이 아니고, 完成된 典型이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므로, 붕괴되는 과정을 통해서 原型을 類推해야 된다는 연구상의 어려움이 있다.”<sup>37)</sup> 따라서 알려진 몇 몇 예만을 분석하여 어떤 일정한 형식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형식이 모든 호적에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우며, 더우기 그 몇 몇 예들이 서로 다른 형식을 보여줄 때는 추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거나 숫제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것이다.

분명히 이러한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金輅의 戶籍을 추정복원해 보면 다음과 같다.

37) 許興植, 앞의 든 책, p. 7.



추정복원은 重刊譜에 실린 帳籍을 기본자료로 하고 내용중 부족한 부분은 三·四·五刊譜에서 찾아 넣었으며, 형식은 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된<sup>38)</sup> 朝鮮太祖 戶籍原本의 4-8쪽을 분석하여 참조하였는데, 밀줄친 부분은 帳籍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을 표시한 것이고, 괄호 안에 ‘?’ 표시와 더불어 사용된 문자는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문자들이고, ‘?’ 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것들이라 생략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洪武貳拾參年庚午 帳籍

戶前左右衛保勝郎將金輅年肆拾本禮安

父奉善大夫備巡衛精勇護軍(金?)方軾故

祖中顯大夫備巡衛大護軍金鈕故

曾祖中顯大夫備巡衛大護軍致仕(金?)成世故

母永貞郡夫人鄭氏本基州

外祖承奉郎解官祇侯鄭仁烈故

戶妻德豐郡夫人尹氏年肆拾參本同郡

父朝靖郎知安山郡事(尹?)仁禧故

祖中正大夫監察執義(尹?)奕瞻故

曾祖承奉郎通禮門祇侯(尹?)周彥故

母?本基州(故?)

外祖徵仕郎都染署令鄭需故

并産?印

戶祖金鈕妻?本三陟

38) 엄밀하게 말하면 朝鮮太祖 戶籍原本은 1391년 8월 이후부터 1392년 7월까지의 만 1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같은 책, P. 33.) 이 자료는 1390년부터 다음의 장적이 만들어 지는 1393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父散員同正金琬

祖中尹(金?)鏡成

曾祖(金?)君柱

母?本高敞

外祖令同正吳均生

戶曾祖中顯大夫備巡衛大護軍致仕金成世

夫戶長(金?)希寶

祖戶長中尹(金?)敦富

曾祖戶長(金?)存誠

母?本福州

外祖圓丘壇直權得鈞

戶曾祖妻父及第權萬紀本同州

父神騎都領(權?)允和

祖副戶長(權?)時中

曾祖副戶長(權?)端正

母?本同州

外祖別將同正金得剛

戶外祖承奉郎解官祇侯鄭仁烈本基州

父書雲副正鄭琳

祖直長鄭緹

曾祖?(鄭?)?

母?本?

外祖?

戶外祖鄭仁烈妻?本基州

父令同正(安?)世文

祖?(安?)?

曾祖?(安?)?

母?本?

外祖?

戶妻父朝靖郎知安山郡事尹仁禧本德豐

父中正大夫監察執義(尹?)奕瞻

祖承奉郎通禮門祗候(尹?)周彦

曾祖?(尹?)?

母?本?

外祖?

戶妻矣外祖徵仕郎都染署令鄭需本基州

父?(鄭?)?

祖?(鄭?)?

曾祖?(鄭?)?

母?本?

外祖?

戶妻矣外祖鄭需妻?本?

父?

祖?

曾祖?

母?本?

外祖?

戶玄祖戶長金希寶

夫戶長中尹(金?)敦富

祖戶長(金?)存誠

曾祖戶長金尙

母?本甫城

外祖戶長趙元

戶玄祖妻父圓丘壇直權得鈞本福州

父閣門祗候(權?)允平

祖郎將(權?)存富

曾祖副戶長(權?)淑清

母?本福城

外祖殿中內給事同正文昌修

戶父母同生?

戶?父邊傳來奴?印

추정복원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밝히면 아래와 같다. 편의상 金格의 戶籍에 기록된 내용의 순서대로 설명하겠다.

帳籍에는 淸頭에 '洪武二十三年庚午 帳籍'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원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는 연도만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월일이나 행정구역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호적원본의 본문중에 있는 구체적인 최하위의 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점은 朝鮮太祖 戶籍原本의 書頭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朝鮮太祖 戶籍原本에는 첫머리에 '洪武貳拾參年庚午拾貳月 日和寧府戶口柱帳施行/東面德興部'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앞의 기록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다. 따라서 帳籍의 書頭는 金格의 戶籍을 만들 때나 아니면 帳籍으로 재구성할 때 임의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자표기방법에 있어서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방식인 '貳拾參'으로 표기하지 않고 '二十三'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서 帳籍으로 재구성할 때, 그것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적었을 가능

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추정과 한 가지 다른 예만을 가지고 원 기록을 복원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金格의 戶籍에서도 書頭는 帳籍의 書頭に 있는 ‘洪武二十三年庚午 帳籍’을 수자표기 방법만 바꾸고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帳籍에는 연도와 나이를 나타내는 모든 수자가 一, 二, 三 식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金格의 戶籍에서는 壹, 貳, 參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朝鮮太祖 戶籍原本 4-8쪽에는 예외로 6쪽 1행에 一, 二, 三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sup>39)</sup> 그 외에는 모두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40) 이러한 표기법이 고려시대의 일반적 방식이었다.

金格의 戶籍에서 호주, 처 및 각 추심의 기준이 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의 첫머리에는 ‘戶’자를 붙여야 한다. 그러한 예는 朝鮮太祖 戶籍原本 4-8쪽의 호적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帳籍으로 재구성할 때는 호구단자의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록은 ‘戶’자를 붙이지 않고, 바로 ‘并産’으로 시작한다.<sup>41)</sup>

帳籍에서는 호주와 처의 나이를 간지로 마지막에 표현하였지만, 이것은 나중에 호구단자의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간지를 적지 않는다. “高麗時代의 戶籍에는 나이 다음에 干支를 적어 넣지 않은 예가 일반적이다.”<sup>42)</sup>

金方軾의 職役은 帳籍상의 金格의 단자에는 ‘奉善大夫備巡衛精勇護軍’으로 나타나는 반면 金方軾의 단자에는 ‘興威衛保勝中郎將’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職役이 나타나는 데서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

39) 朝鮮太祖 戶籍原本, 6쪽 1행. “... 崔得守年五十六 ...”

40) 朝鮮太祖 戶籍原本 4-8쪽의 전반을 참조.

41) 朝鮮太祖 戶籍原本 4-8쪽에서는 8쪽 5호에서만 ‘戶’자를 쓰고 나머지 21개처에서는 ‘戶’자를 쓰지 않고 있다.

42) 許典植, 앞에 든 책, p. 136.

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자의 職役은 정4품의 벼슬이고 후자의 職役은 정5품의 벼슬로서 후자가 더 낮은 벼슬이다. 그렇다면 金方軾의 최종 벼슬은 전자의 職役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金格의 戶籍에서도 金方軾의 職役이 정4품의 職役으로 표시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金格의 父인 金方軾의 死後라야만 金格이 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후세에 金方軾의 다른 職役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호적원본상의 職役보다 낮은 職役을 굳이 帳籍上에 수록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重刊譜부터 五刊譜에 이르기까지의 족보상의 金方軾에 관한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전자의 職役만 표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帳籍上에는 낮은 職役도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金方軾이 후자의 벼슬을 하고 있을 때 작성했던 호구단자라도 당시에 전해지고 있어서 帳籍을 재구성하는데 참고되었던 것은 아닐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왜 높은 職役을 알고 있었는데도 낮은 職役을 함께 썼을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어찌되었건 金格의 戶籍에서는 전자의 職役만 쓰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호적원본상에서는 같은 사람의 職役을 두 가지로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帳籍이 족보 발간시에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帳籍에서는 호주의 父系直系先祖와 처 또는 妻父의 父系直系先祖에 대한 성명을 기록할 때는 일률적으로 名만 표시하고 姓의 자리는 한 자 비워두었는데, 朝鮮太祖 戶籍原本에서는 姓을 기록한 경우가 많고 姓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姓의 자리를 비워둔 예는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金格의 戶籍에서는 姓을 표시하든 표시하지 않든 붙여 쓰야 할 것이다. 帳籍에서 표시방법을 달리 한 것은 호구단자 형식으로 재구성할 때 호주와 처 또는 妻父와 同姓이므로 생략하고, 생략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 字間 비워둔 것으로 보인다. 金格의 戶籍에서의 기록방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朝鮮太祖

戶籍原本 4-8쪽에 나타나는 호주와 처 또는 妻父의 父系直系先祖에 대한 성명 표시방법을 분석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朝鮮太祖 戶籍原本 4-8쪽상의 호주와 처 또는 妻父의 父系直系先祖에 대한 성명 표시방법

姓\名	1자	2자 이상	미기록	계
기록	79(98.75%)	46(48.42%)	2	127
미기록	1(1.25%)	49(51.58%)	0	50
계	80(100%)	95(100%)	2	177

<표 2>를 보면 名이 한 자일 경우에는 姓을 대부분 기록하고, 名이 두 자 이상인 경우에는 姓을 기록한 경우와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반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을 金輅의 戶籍에도 적용하여 名이 한 자일 경우에는 姓을 기록하였지만, 名이 두 자 이상인 경우에는 姓을 기록한 경우와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반반인데다, 누구의 姓을 기록하고 누구의 姓을 기록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어느 쪽으로도 결정할 수가 없어서 불명으로 처리하였다.

추심의 기준이 되는 사람의 성명 표시방법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여기에서 함께 살펴보자. 추심호에서 여자가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호칭을 추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자의 호칭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가 기준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체로 성명을 기록하거나 名만 기록하는 경우 뿐이어서 다소 추정하기가 쉽다. 朝鮮太祖 戶籍原本의 추심호들에서 기준이 되는 남자들의 성명 표시방법을 분석해보면, 성명을 기록한 경우는 10건인 반면 名만 기록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자로 된 이름인가 아니면 두 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이름인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성명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亡者에 대한 ‘故’ 표시는 기본호에서만 표기하고 추신표에서는 생략하되, 그 형식도 帳籍에서는 小字로 표시하였지만 호적원본에서는 다른 글자와 같은 크기였을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朝鮮太祖 戶籍原本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帳籍中 金絡의 단자를 보면, 윗 대의 기록중 유독 모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에만 <故>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호적원본과 사본이 작성될 당시에 金絡의 모가 생존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호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고려후기의 호구단자들중에는 夫가 사망했을 경우에 처를 호주로 하여 그의 四祖를 기록한 다음에 夫의 四祖를 기록하는 순서를 취한 경우가 있고,<sup>43)</sup> 世宗 때의 호적에서도 그러한 예를 볼 수 있으나,<sup>44)</sup> 고려말에는 개혁주의자들이 호적제도를 완전히 父系中心으로 작성하는 방안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이므로,<sup>45)</sup> 호주는 金絡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앞으로 복원하게 될 金絡의 처의 모는 당시에 생존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불명으로 처리하였다.

帳籍中 金成世의 단자에 나타나는 ‘<古名公淑>’과 ‘<古名洪壽>’라는 기록은 帳籍으로 재구성할 때 적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호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호구단자들 중에는 古名이 함께 기록된 경우가 많이 보이는 반면,<sup>46)</sup> 朝鮮太祖 戶籍原本에서는 어디에서도 古名을 표시한 예가 없다. 따라서 金絡의 戶籍에서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金絡의 처의 本<sup>47)</sup> 표시는 帳籍上에는 ‘德豊’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金絡

43) 『驪州李氏小陵公派譜』, 1745년판에 수록된 驪州李氏 癸酉(1333)年 准戶口와 壬子(1372)年 准戶口.

44) 『海州崔氏大同譜』에 실린 世宗祖 戶籍에는 女도 호주로 기록되고 있다.

45) 許典植, 앞의 든 책, pp. 44-45.

46) <표 1>의 1, 3, 4, 5, 6, 7, 8, 13, 14, 15 및 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 戶籍에서는 달리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本이 바로 앞에 나오는 本 표시와 같을 경우에는 그 지역명이나 행정구역명을 本 표시로 표기하지 않고 다른 표현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金輅의 처의 本 표시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조의 처 추심호에서 기준이 되는 妻父 權萬紀의 本 표시도 이 표현법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표현법을 알기 위해서는 朝鮮太祖 戶籍原本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朝鮮太祖 戶籍原本 4-8쪽의 호적에 나타나는 姓과 本 표시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本 표시로 지역명이나 행정구역명으로 표시되는 본래의 本貫을 적지 않은 경우를 찾아보면, 4쪽 1,48) 2, 3, 5, 6호, 5쪽 2, 4, 5, 6호, 6쪽 1, 2호, 7쪽 2호, 8쪽 2, 3, 5,49) 6호에서 '同村'을, 7쪽 1호에서는 '同郡'과 '同府'를 각각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중 '同村'으로 표시된 곳은 모두 25개처이고, '同郡'과 '同府'가 각각 1개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帳籍에도 같은 類의 기록이 보이는데, 즉 金成世의 호구단자중 妻父의 외조의 本貫이 '同州'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同村에 대해서는 한 때 崔在錫님은 村姓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 지은 적이 있었다. 즉 朝鮮太祖 戶籍原本은 어떤 촌락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村內에 살고 있는 자는 '同村'으로 표시하고 원거리지역에 本이 있으면

47) 보통 '本'은 本貫으로 해석하고 있다.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 서울大出版部, 1969, p. 59.

48) 4쪽 1호에서는 '本同同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本同'까지를 1행에 기록하고 '同村'부터는 2행에 기록하면서, 즉 행을 바꾸면서 실수로 '同' 자를 중복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49) 8쪽 5호에는 '本同村外'라고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 중 '外'자에 대해서 許興植님은 外祖와 연결시키려다가 첨가된 謄記로 보았으며, (許興植, 앞에 든 책, p. 99, 주 70.) 필자도 같은 의견이다.

<표 3> 朝鮮太祖 戶籍原本에 나타나는 姓과 本 표시

	戶主			妻		其他	祖妻		曾祖	曾祖妻				
	本人	母	本人	母, 外祖	本人, 父		母	母	本人	母				
4等1立	張:蔚	珍	林:同	村	金:通	州	李:城	州						
2	朴:龍	津	朴:同	村	蔡:平	江	金:寧	遠						
3	金:金	州	李:黃	間	林:蔚	珍	今:同	村						
4	金:升	府	李:金	州	金:永	清	李:隨	州						
5	林:蔚	平	金:三	州	朴:高	城	李:同	村						
6	崔:清	河	李:羽	涉	金:寧	仁	金:同	村	弟妻 ? : 晋州					
5等2立	全:旌	善	陳:文	州	元:原	州	李:同	村						
3	趙:橫	川	元:蔚	州	陳:運	山	朴:文	州						
4	金:三	州	金:申	縣	崔:同	州	趙:蔚	州	壹女夫 趙:同村					
5	朴:登	州	金:同	谷	申:文	州	朴:平	州	壹女夫 申:歙谷					
7	金:益	守	金:永	村	朴:原	州	黃:平	海	壹女夫 吳父兄妻 ? : 漢州					
8	李:旌	善	徐:和	縣	安:順	與	鄭:平	州	先妻妻 ? : 長州					
6等1立	崔:豐	山	廉:龍	潭	廉:龍	潭	廉:同	村	後妻 ? : 登州					
2	李:牛	峯	李:古	卓	徐:保	安	田:同	村	壹男妻 ? : 寧仁鎮	朴:比屋縣	朴:同村	崔:同村	崔:同村	李:同村
7等1立	李:和	寧	?	?	?	?	?	村	貳男妻 ? : 登州					
2	吳: ?	?	金:順	川	石:洪	川	張:同	村	參男妻 ? : 龍潭					
8等1立	?	?	?	?	?	?	金:廣	州	壹女夫 蔡:文州					
2	林:蔚	珍	林:同	村	崔:江	陵	朴:蔚	州	壹女夫 黃:海平					
3	朴:長	寶	朴:同	村	李:谷	城	李:長	甫	壹女夫 黃:海平					
4	廉:龍	潭	全:天	安	徐:麻	田	金:文	州	壹男妻 ? : 呂陽					
5	金:珍	山	崔:麟	蹄	吳:同	村	金:巨	也	壹男妻 ? : 龍津					
6	徐:甫	安	金:同	德	徐:甫	安	金:尙	州						
7	金:三	陟	金:德	原	金:寧	仁	金:旌	善						

外祖 母	外祖妻		妻父		妻外祖	妻矣外祖妻		玄祖妻	父母同生, 同父異母
	本人, 父	母	本人	母	母	本人, 父	母	本人	
徐:長城郡	全:天安郡	全:龍宮	廉:龍潭	廉:同村		廉:同村	? :同村		長妹夫 池:長平 次妹夫 金:寧仁嶺 次弟妹夫 徐:雙阜縣
? :忠州 金:同村	高:江華 金: ? 嶺	金:通口縣 姜:衿州		李:同郡 朴: ?	朴:和寧府	朴:同府	方:益谷縣	沈:三陟	次妹夫 李: ? 異母妹夫 玄:龍津

누구나 알 수 있는 넓은 府·郡·縣名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이다.<sup>50)</sup> 그러나 후에 許興植님은 朝鮮太祖 戶籍原本의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부정하고, ‘同村’으로 기록된 本貫은 바로 앞에 나온 姓의 本貫과 같다고 결론지었으며 同府와 同郡도 同村과 다름없다고 하였다.<sup>51)</sup> 필자도 許興植님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朝鮮太祖 戶籍原本에서 ‘同村’과 바로 앞에 나오는 관계 기록을 관련지워 살펴보면, 모두 本貫名과 관계되는 것으로 그 중 지역명은 蔚珍을 비롯하여 12종의 지역명이 19회 나타나고, 행정구역명은 歙谷縣을 비롯하여 3종의 縣名이 6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同郡’의 경우는 7쪽 1호의 추심호에서 “母威安郡夫人李氏本同郡”이라 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許興植님은 同郡이란 이 기록의 바로 앞에 나오는 本 표시인 ‘通口縣’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기록상의 ‘威安郡’과 같다는 뜻으로, 封郡夫人인 李氏에게 있어서 威安郡이 바로 그녀의 本貫이라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sup>52)</sup> 마침 이 帳籍에도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즉 “妻德豐郡夫人尹氏年四十三本德豐戊子生”이라는 金絡의 처의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尹氏의 封郡 표시는 ‘德豐郡’으로 되어 있고 本 표시는 ‘德豐’으로 되어 있어서 兩者가 같은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許興植님의 추측은 더욱 확실해진 것이다. 그러나 朝鮮太祖 戶籍原本에서는 ‘同郡’이라 표기하고 있는 반면, 帳籍에서는 정식으로 本貫을 표기하여 표현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규명할 것이다. 한편 ‘同府’도 역시 같은 추심호에서만 1회 나타나는데, ‘同郡’과는 달리 바로 앞에 나오는 本貫

50) 崔在錫, “高麗後期家族의 類型과 構成 : 國寶 131號 高麗後期 戶籍文書分析에 의한 接近,” 『韓國學報』, No. 3, (1976), p. 50.

51) 許興植, 앞의 든 책, pp. 97-99.

52) 같은 책, p. 98.

인 和寧府와 같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우선 朝鮮太祖 戶籍原本에서 다른 곳에서는 한결같이 ‘同村’이 쓰였으나 7쪽 1호의 추심호에서만 어째서 ‘同郡’·‘同府’가 쓰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 許興植님은 추심호이므로 복잡한 本貫의 표시를 앞의 本貫과 같다는 의미인 ‘同村’을 자주 쓰기를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추측하였다.<sup>53)</sup> 帳籍에서 金得剛의 本 표시인 ‘同州’도 金絡의 戶籍으로 추정복원했을 때 추심호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이러한 추측은 가능성을 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6쪽과 7쪽의 추심호에서는 ‘同村’으로 표시된 곳도 아홉 곳이나 된다. 그렇다면 같은 용어를 자주 쓰기를 회피하여 다르게 표현하였다면 어느 것을 다르게 표현하였는가? 예가 적어서 우연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同村’으로 표시된 곳은 모두 지역명이거나, 縣名 즉, 府·郡·縣이라는 행정단위중 가장 작은 단위이고, 다르게 표시된 곳은 府와 郡이라는 보다 큰 행정단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즉 ‘同村’이 자주 되풀이 될 경우에는 本貫名中에서 뒤에 공통적으로 붙는 행정단위명이 있는 本貫名을 대상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村’이라고 표시하기는 곤란한 큰 행정단위로 표시되는 本貫을 우선적으로 다른 용어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帳籍에 나타나는 ‘同州’는 權萬紀의 本 표시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앞의 本貫名인 福州과 같다는 뜻으로 쓰인 것인데, 이 경우에는 金絡의 戶籍에는 本貫으로 지역명만 나타나므로 지역명중 前代에 행정구역명으로 쓰였던 ‘州’가 붙어있는 지역명인 福州를 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앞으로 예가 더 많이 발견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尹氏의 本 표시인 ‘德豊’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朝鮮太祖 戶籍原

53) 같은 책, 같은 쪽.

本에서는 李氏의 本을 '同郡'으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本貫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예를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표 3>을 검토해보면 같은 本貫이 연속될 때 '同村', '同郡' 또는 '同府'로 표기한 곳은 모두 27개처인 반면, 本貫을 그대로 표기한 곳은 6쪽 1호의 2개처와 8쪽 6호의 1개처만 있다. 따라서 같은 本貫이 연속될 때는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許興植님의 견해를 따르면 역시 封郡夫人인 尹氏에게 있어서도 德豐郡이 바로 그녀의 本貫이라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결국 같은 本貫이 연속해서 기록되는 경우가 되므로 帳籍에서와 같이 本貫을 그대로 적을 것이 아니라 '同郡'으로 고쳐 표기해야 옳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가 하나 밖에 없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

金格의 戶籍中 조의 처에 대한 추심에서 기준이 되는 妻父 權萬紀의 本 표시도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살펴보자. 權萬紀의 本貫은 帳籍上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나 重刊譜에는 '福州'로 기록되어 있다.<sup>54)</sup> 그러나 本 표시는 '福州'로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金格의 戶籍에서 權萬紀의 本 표시 바로 앞에 나오는 本貫은 權得鈞의 것인데, 權萬紀의 本貫과 동일한 福州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 같은 本貫이 한번만 반복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同村'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뒤에 나오는 本貫이 '同州'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同州'로 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朝鮮太祖 戶籍原本에서 일반적으로 쓰인 同村을 사용할 경우에는 本貫의 순서가 福州→同村→同州의 순서가 되므로 同村→同州가 맞지 않게 된다. 그보다는 福州→同州→同州의 순서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4) 「宣城金氏族譜」, 重刊譜, 卷之一, 張 1 右, 成世.

帳籍上에는 金輅의 모를 제외한 나머지 호주나 妻父의 모에 관한 기록이 빠져 있지만 金輅의 戶籍에는 기록이 있었을 것이다. 朝鮮太祖 戶籍原本을 살펴봐도 모에 관한 기록이 생략된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 대부분의 모에 관한 기록을 생략한 것은 아마도 帳籍으로 재구성할 당시에는 여자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帳籍上에 모에 관한 기록이 金輅의 모에 관한 기록 뿐이고 나머지 여섯 곳에서는 생략된 점이나, 처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金輅의 단자 뿐이고 나머지 세 단자에는 처를 기준으로 한 기록의 전체가 없거나 妻父를 기준으로 삼은 점이 다 그러한 이유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帳籍上에 기록된 여자에 관한 기록은 金輅의 모와 처에 관한 기록 뿐인데, 그 두 사람이 다 封郡夫人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높은 지위에 올라 封郡된 여자의 경우에만 기록하거나 기준으로 삼고, 封郡되지 않은 다른 모에 관한 기록은 생략하고, 또한 封郡되지 않은 다른 처에 관한 기록은 妻父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통하여 처에 관한 기록을 생략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여자를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다만 帳籍으로 재구성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밝힐 수 없어서 그러한 경향이 어느 시기에 있었던가를 밝힐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金輅의 단자에서는 처나 모의 호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명으로 처리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대부분이 '召史'였을 것이다. 召史는 吏讀로서 '조이'라고 발음하는데, 良民의 아내나 寡婦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호칭이다.<sup>55)</sup> 참고로 朝鮮太祖 戶籍原本에서 처와 모의 호칭 표시방법을 분석해보면 <표 4>와 같다.

55) 東亞出版社 漢韓大辭典 編纂部 編, 「[東亞]漢韓大辭典」, 2版, 서울, 東亞出版社, 1985.

&lt;표 4&gt; 朝鮮太祖 戶籍原本에 나타나는 처와 모의 호칭 표시방법

처·모\호칭	召史	召史+名	姓+名	姓+氏	名	계
처(선처·후처 포함)	13		2	2	14	31
모	49	1	1		7	58
계	62	1	3	2	21	89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의 경우에는 '召史'로 표시한 경우와 名만 표시한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모의 경우는 '召史'로 표시한 경우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모의 호칭 표시를 '召史'로 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기본호에서 뿐만 아니라 이어 나오는 모든 추심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金輅의 처의 모의 호칭 표시 다음에는 本이 기록된다. 조선후기에는 여성의 本을 '籍'이라고 표기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남녀 모두 '本'이었다.<sup>56)</sup> 三刊譜에 보면 처의 외조의 本이 基州로 나타나고 있으므로<sup>57)</sup> '本基州'로 표시하면 된다. 帳籍上에 외조의 성명 표시 다음에 本을 기록한 것은 모에 관한 기록을 생략했기 때문으로, 모에 관한 기록을 되살리려면 본 기록은 당연히 모의 호칭 다음에 기록되고 외조의 성명 표시 다음에서는 생략되어야 한다.

기본호의 마지막에는 '并産'이라 기록하고 이하 자식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을 것이다. 洪武 23년 당시 호주인 金輅의 나이가 40세이고 長子인 金小良은 洪武 17年 甲子生이므로<sup>58)</sup> 당시 7세가 된다. 그리고 기타 자녀들의 출생년도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결혼년령이 남자 20세, 여자 19세인 점을 고려한다면<sup>59)</sup> 女中 일부 또는 전부가 長子인 金

56) 許興植, 앞에 든 책, p. 137.

57) 「宣城金氏世譜」, 三刊譜, 卷之一, 張 1 右, 輅.

58) 「宣城金氏族譜」, 重刊譜, 卷之一, 張 1 左, 小良.

59) 許興植, 앞에 든 책, p. 446.



小良보다 먼저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차남 이하 3명의 지도 일부 또는 전부 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金輅의 戶籍에서는 자녀간의 선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모두 생략했다.

자식들에 관한 기록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印’ 자를 기록했다. ‘印’ 자는 기본호의 끝 부분과 호적의 전체기록이 끝나는 부분에 표시된다. 朝鮮太祖 戶籍原本에는 ‘印’ 자 외에도 ‘節付印’ 또는 ‘節付’가 쓰인 경우도 있지만, ‘印’이 23개처에서 쓰인 반면, ‘節付印’은 6개처에서 ‘節付’는 1개처에서만 쓰였기 때문에 ‘印’이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식에 대한 기록이 끝나면 추심호가 이어진다. 추심호에 대해서는 이미 II-2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金輅의 戶籍을 복원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추심호 玄祖와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에 관해서 규명해보고, 일반적인 추심호의 양식중에서도 복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朝鮮太祖 戶籍原本에는 비록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나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이 마지막에 덧붙여져 있는 예가 있다.<sup>60)</sup> 그 예를 살펴보면 다른 추심들과는 달리 본인과 父에 관한 사항만 있는데, 실상 그 두 사람에 관한 사항은 종조의 추심호중 모와 외조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과 父에 관한 사항만으로 이루어진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은 그것이 수록된 朝鮮太祖 戶籍原本에서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시사해 준다. 즉,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이 존재했다는 것과 그것이 완전한 형태로도 존재했을 가능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玄祖에 대한 추심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60) 朝鮮太祖 戶籍原本, 7책 6행. “... 戶玄祖金中妻沈氏本三陟 父檢校大護軍沈公襲...”

우선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예가 있으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완전한 형태로도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朝鮮太祖 戶籍原本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추심호는 II-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항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유독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만 그런 원칙을 따르지 않고 본인과 父에 관한 사항만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은 朝鮮太祖 戶籍原本의 한 군데에서만 그 예가 보일 뿐 다른 곳에서는 어떤 형태의 것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독특한 예를 원칙이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다른 추심들과 마찬가지로 본인 또는 父, 父, 조, 증조, 모 및 외조에 관한 사항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충분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을 원칙에 따라 복원했을 때 그것이 帳籍에 있어서 金希寶의 단자중 妻系에 관한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金希寶의 단자중 妻系에 관한 기록은 바로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에서 채록된 것이며,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은 호적원본에 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朝鮮太祖 戶籍原本에서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의 기록이 불충분하게 된 이유는 玄祖의 처의 父, 조, 증조, 모 및 외조가 호주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5代, 6代, 7代, 5代 및 6代 선조로서 먼 윗대 선조이기 때문에 기록을 찾기가 어려웠거나, 기억해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보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추심호에 관한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위와 같은 추론이 가능할 뿐이다. 이 점은 이어서 거론할 玄祖에 대한 추심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玄祖에 대한 추심도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앞에서 든 일반적인 추심의 종류를 살펴보면, 8종의 추심중 6종, 즉 호주의 중

조와 증조의 처, 외조와 외조의 처 및 처외조와 처외조의 처에 대한 추심이 夫妻를 대응시키는 원리(61)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도 그러한 원리를 따라 玄祖에 대한 추심과 더불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玄祖에 대한 추심도 원칙에 따라 복원했을 때 그것이 帳籍에 있어서 金希寶의 단자중 본인에 관한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金希寶의 단자중 본인에 관한 기록도 바로 玄祖에 대한 추심에서 채록된 것이며, 玄祖에 대한 추심은 호적원본에 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중에는 어디에도 玄祖에 대한 추심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런데 玄祖와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만 조사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선 玄祖와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은 앞에서 든 일반적인 추심의 종류에 들어있지 않다. 일반적인 추심의 종류는 기본호의 기록과 관계가 있다. 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호의 기록내용과 일반적인 추심의 종류를 대비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기본호의 기록내용과 일반적인 추심의 종류 대비표

기본호의 기록내용		일반적인 추심의 종류
호주	본인 父 조 증조 모 외조	조의 처 증조, 증조의 처 외조, 외조의 처
호주의 처	본인 父 조 증조 모 외조	처의 父  처외조, 처외조의 처

61) 許興植, 앞에 든 책, p. 56.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추심의 종류는 기본호의 기록내용과 대응이 되며 기록 순서도 같다. 그런데 玄祖와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은 기본호의 기록내용과 대응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록순서도 朝鮮太祖 戶籍原本에 나타나는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증조의 처 다음이 아니라 마지막인 처외조의 처에 대한 추심의 다음에 놓인다.

그리고 추심호의 작성목적이 특수한 경우에 신분을 확인하려는 한 가지 방법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sup>62)</sup> 일반적인 추심만으로도 충분히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玄祖나 玄祖의 처에 대해 추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추심호 전반에 걸쳐서 복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자. 추심들중 남자가 기준이 되는 추심은 양식이 일정하여 복원하기가 쉬운 반면 여자가 기준이 되는 추심은 양식이 다양하여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처에 대한 추심들 즉, 조의 처, 증조의 처, 외조의 처, 처외조의 처 및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에서 누가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 각 처에 대한 추심들은 II-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처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妻父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朝鮮太祖 戶籍原本에 나타나는 각 처의 추심들의 基準人을 분석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朝鮮太祖 戶籍原本에 나타나는 각 처의 추심들의 基準人

추심 기준	처	妻父
조의 처	2	1
증조의 처	1	1
외조의 처	2	1
처외조의 처	1	1
玄祖의 처	1	
계	7	4

62) 같은 책, p. 57.

<표 6>을 살펴보면 처가 기준이 된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처를 기준으로 한 경우와 妻父를 기준으로 한 경우가 혼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金輅의 戶籍을 복원하는데에는 다른 근거가 더 필요하다. 우선 그 근거를 帳籍에서 찾아보자. 妻父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처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한 代씩 더 높아진다. III-2에서 밝혔듯이 金輅의 戶籍은 나중에 帳籍에서 호구단자의 형태로 변형되었으므로, 帳籍에서 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처의 玄祖나 父의 외조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면 妻父를 기준으로 했다고 추정해도 좋을 것이다.

帳籍에는 金成世의 妻父를 기준으로 한 단자와 金希寶의 妻父를 기준으로 한 단자가 있다. 이들은 각각 金輅의 戶籍에서는 증조의 妻父와 玄祖의 妻父를 기준으로 하는 추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추심은 妻父를 기준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세 추심중 조의 처 추심에 필요한 내용은 重刊譜에는 처의 父만 기록되어 있고, 三·四·五刊譜에는 처의 증조까지와 외조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처를 기준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조의 처와 처외조의 처에 대한 추심은 帳籍과 족보의 어느 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어느 쪽에도 실릴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두 추심은 다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편의상 <표 5>에서 다수로 나타나는 처를 기준으로 하는 추심으로 복원하였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각 처의 추심들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의 표기방법이다. 이 표기방법에 있어서의 일정한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朝鮮太祖 戶籍原本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妻父가 기준이 되는 추심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간격은 같은 요소끼리 줄을 맞추어 보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자가 임의로 둔 것이다.

戶	祖妻父	戶長	沈和尚	本三陟	(7쪽 2호)
戶	曾祖妻父	戶長同正行戶長中尹	崔琪	本同村	(6쪽 1호)
戶	外祖妻父	令同正	全長祐	本天安郡	(6쪽 1호)
戶妻矣	外祖妻父	散員同正	高世	本同村	(6쪽 1호)

다음으로 처가 기준이 되는 추심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의 처:	戶	祖	崔輔	矣妻	召史	本比屋縣	(6쪽 1호)
	戶	祖	李應時	矣妻	召史	本晋州	(6쪽 2호)
증조의 처:	戶	曾祖		妻	召史	本和平	(7쪽 2호)
외조의 처:	戶	外祖	禹仁迪	妻	召史	本江華	(7쪽 1호)
	戶	外祖		妻	召史	本?鎭	(7쪽 2호)
처외조의 처:	戶妻矣	外祖	金之祐	妻	朴氏	本同府	(7쪽 1호)
현조의 처:	戶	玄祖	金中	妻	沈氏	本三陟	(7쪽 1호)

위의 예들을 보면 대체로 일정한 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 처외조의 처에 대한 推尋의 경우에 戶 표시와 관계표시 사이에 '矣妻'를 기록한 것은 호주의 외조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夫의 성명은 기록한 경우가 5건,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2건이므로 기록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를 기준으로 한 조의 처에 대한 推尋에서는 둘 다 처 표시 앞에 '矣'가 들어가나 같은 조건에 있는 나머지 5건의 추심에서는 '矣'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矣'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유독 조의 처에 대한 推尋에서만 둘 다 표기된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된다. 金輅의 戶籍에도 이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복원하였다.

조의 처, 외조 및 외조의 처에 대한 추심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宣城金氏族譜들에서 보충하였다.<sup>63)</sup>

63) ① 「宣城金氏族譜」, 重刊譜, 卷之一, 張 1, 鈕. "室三陟金氏 散員同正承祐之女."

추심들중 호주와는 다른 家系의 사람을 기준으로 한 추심 즉, 조의 처, 증조의 처, 외조, 외조의 처, 妻父, 처외조, 처외조의 처 및 玄祖의 처에 대한 추심에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의 기록 끝에 本貫 표시가 있어야 한다.

帳籍中 金方軾의 단자에 나타나는 '改名承祐'라는 기록은 호적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다. 보통 이름을 바꾸었을 경우 호구단자에는 바뀐 이름을 먼저 적고 바뀌기 전의 이름은 '古名' 표시를 한 다음에 적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改名'이라고 적을 경우에는 바뀌기 전의 이름이 먼저 적히고 '改名' 표시 다음에 바뀐 이름이 적히게 된다. 따라서 순서상 상례에 어긋나게 된다. 더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호적원본에는 숫제 바뀌기 전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古名' 표시도 없다. 그러므로 金格의 戶籍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옳다. 改名이라는 문자의 뜻으로 보아서는 후세에 帳籍의 기록에 추가가입한 것으로 짐작된다.

추심들중 妻父를 포함한 남자가 기준이 되는 추심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사람의 職役을 완전하게 기록하지만, 여자가 기준이 되는 추심에서는 夫의 職役은 적지 않고 성명만 적는다.<sup>64)</sup>

父母同生과 노비관계 기록은 호적원본에는 있었겠지만 帳籍上에는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므로 金格의 帳籍에서도 불명으로 처리한다.

## V. 金格의 戶籍과 宣城金氏族譜의 관계

金格의 戶籍과 宣城金氏族譜들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족보를 발간할 때

② 「宣城金氏族譜」, 三刊譜, 卷之一, 張 1, 鈕. "配三陟金氏 父散員同正承祐 祖中尹鏡成 曾祖君柱 外祖令同正高敬吳均生一子."

③ 「宣城金氏族譜」, 重刊譜, 卷之一, 張 1 右, 方軾. "室永定君夫人鄭氏 承奉郎解官祇侯仁烈之女"

④ 「宣城金氏族譜」, 三刊譜, 卷之一, 張 1 右, 方軾. "配永定君夫人鄭氏 父承奉郎解官祇侯仁烈 祖書雲副正琳 曾祖直長綱 外祖令同正基州安世文."

64) 朝鮮太祖 戶籍原本上的 추심호들을 분석해보고 얻은 결론이다.

적어도 8代까지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이 金輅의 戶籍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참고한 자료들중 이 호적보다 앞서 만들어진 자료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重刊譜의 8代까지의 기록 내용중 거의 대부분은 金輅의 戶籍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의 기록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 즉 족보상의 기록들중 호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선 분묘에 관한 기록들을<sup>65)</sup> 들 수 있는데 이들 기록은 호적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다음으로는 金成世와 金鈕의 職役에 관한 것으로 우선 金成世의 職役은 帳籍上에는 ‘中顯大夫備巡衛大護軍致仕’ 또는 줄여서 ‘大護軍致仕’로 기록하고 있으나, 족보상에는 “奉翊大夫密直使上護軍으로, 한편 中顯大夫備巡衛大護軍致仕라고도 한다.”<sup>66)</sup>고 하여 다른 職役을 앞세우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편찬자가 金輅의 戶籍이 아닌 다른 근거를 통해 파악한 金成世의 職役, 즉 奉翊大夫密直使上護軍이 종2품으로 金輅의 戶籍에 기록된 종3품의 職役보다 품계가 높으므로 그 職役을 앞세우고 金輅의 戶籍에 기록된 職役은 뒤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金鈕의 職役은 三刊譜부터는 帳籍上에 나타나는 職役 외에도 “…, 한편 密直使라고도 한다.”<sup>67)</sup>고 하여 또 다른 職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三刊譜를 간행할 때에 다른 근거를 참고하여 기록을 보충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密直使가 종1품으로 帳籍에 나타나는 종3품의 職役보다 벼슬이 높긴 하나 품계가 표시되지 않아 불완전하다는 점 때문에, 아니면 불확실한 근거에 의한 職役이라 앞세우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 金方軾과 金輅의 추증사실에 관한 기록들이<sup>68)</sup> 있는데, 이것들

65) 「宣城金氏族譜」, 重刊譜, 卷之一, 張 1 右, 方軾中 7세까지의 墳墓에 관한 기록과 같은 책, 같은 쪽의 輅와 그의 처의 墓에 관한 기록. 이 중 重刊譜의 7세까지의 墳墓에 관한 기록은 “世傳 七世以上墳墓 在禮安縣北 …”이라 하여 출처를 밝히고 있다.

66) 같은 책, 같은 張, 左, 成世. “奉翊大夫密直使上護軍 一云 中顯大夫備巡衛大護軍致仕.”

67) 「宣城金氏世譜」, 三刊譜, 卷之一, 張 1 左, 卣. “… 一云 密直使.”



역시 후대의 기록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중 일부는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기록하였고, 일부는 전래되어 오던 金略의 戶籍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金鈕에 관한 기록중 후처에 관한 기록으로,<sup>68)</sup> 三刊譜 발간시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혀 놓고 있으며,<sup>70)</sup>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서 金略의 戶籍을 추정복원할 때 宣城金氏族譜들에서 참고한 내용들이다. 다만 三刊譜부터 金尙條에 나타나는 8세의 거주지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서 참고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기가 어렵다. 후대의 다른 자료를 참고했을 수도 있고, 金略의 戶籍을 참고했을 수도 있다. 단 후자일 경우에는 IV에서도 언급했듯이 金略의 戶籍의 書頭에는 행정구역명 즉, 거주지명이 기록되어 있었다가 帳籍로 재구성할 때 지금의 제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宣城金氏族譜들에는 金略의 자식 代인 9代부터 비로소 父母同生들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나오는데, 이들 기록은 金略의 戶籍에서 채록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이 金略의 戶籍은 족보를 발간할 때 참고한 가장 오래된 자료였음을 알 수 있다.

## VI. 나오면서

지금까지 宣城金氏族譜들에 실린 ‘洪武二十三年庚午 帳籍’을 대상으로 원형인 金略의 戶籍을 추정복원하고, 이 복원된 金略의 戶籍과 宣城金氏族譜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68) ① 「宣城金氏族譜」, 重刊譜, 卷之一, 張 1, 方軾. “以曾孫淡貴 贈通政大夫吏曹參議.”

② 같은 책, 같은 張, 輅. “以孫淡貴 贈嘉善大夫戶曹參判.”

69) 「宣城金氏世譜」, 三刊譜, 卷之一, 張 1 右, 鈕. “配安東權氏父侃.”

70) 같은 책, 같은 條. “舊譜 配位只書金氏 而按吳校理汝權外姓譜 有權侃女金鈕 鈕女權定 又權司諫定嘉誌 妻父書公諱 故妓以列裔配位及女婿外孫.”

원형의 추정복원을 통하여 이 帳籍은 본래 추심호를 포함한 金輅의 戶籍을 金輅, 金方軾, 金成世 및 金希寶의 호구단자 형태로 변형한 것이며, 원형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변형과정에서 추심호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필요없게 되어 삭제되었고, 父母同生, 자식 및 率居奴婢에 관한 기록도 모두 삭제되었다.

그리고 복원된 金輅의 戶籍과 宣城金氏族譜들을 비교해봄으로서, 족보를 간행할 때 9대까지의 내용은 金輅의 戶籍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원형의 추정복원에는 다행히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으며 國寶 131號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朝鮮太祖 戶籍原本이 원본상태로 남아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고려시대의 일반인들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는 것이 매우 드문만큼 金輅의 戶籍은 朝鮮太祖 戶籍原本과 더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朝鮮太祖 戶籍原本처럼 원본, 즉 일차자료가 못되는 점, 본래의 형태가 변형된 점, 단 하나의 家系만을 나타내는 한계점, 또한 분명히 기재되었어야 할 父母同生, 자식 및 率居奴婢가 생략된 점 등으로 인하여 그 史料的 가치는 많이 떨어지므로 이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I에서 밝혔듯이 복원된 金輅의 戶籍을 대상으로 한 社會史的인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 연구는 끝이어서 다른 지면을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하여 先學들의 많은 가르침을 구한다.

<參考文獻은 脚註로 대신함>

## Restoration of the register of houses, inhabitants and their ancestry in the late Koryo period which is in the Sunsong Kim family registers

Sang-kee Yoon\*

Through the restoration, we can find that the register of houses, inhabitants and their ancestry, which is in the Sunsong Kim family registers, was fundamentally the census register of Kim Roe including more ancestry transformed into the lists of house, inhabitants and their ancestry of Kim Roe, Kim Bang-seek, Kim Sung-Sae and Kim Hee-Bo. And we can find also the original forms were considerably damaged. That is, in the the course of transformation, the considerable parts of the contents of ancestry were not needed, so they were removed, the recordings of brotherandsisters, sons and their servants were also removed.

By comparing of the restored census register of Kim Roe and the Sunsong Kim family registers, we can know the fact that when they published the family registers, the contents of the founder to the ninth descendants were totally depended on the census register of Kim Roe.

The Census Register of King Taejo of Choson Dynasty(National Treasure No. 131) which has been recorded almost same periods as the census register of Kim Roe was remained as an original state.

---

\*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nggeui University.

Therefore, it was greatly helpful for restoring the census register of Kim Roe.

There were few materials which we can know the way of ordinary life in Koryo period. But through the census register of Kim Roe and the census Register of King Taejo of Choson Dynasty, we have a glimpse of their life history. Nevertheless we can find some demerits in the census register of Kim Roe as follows; First, it is not an original but a transformed one, while the Census Register of King Taejo of Choson Dynasty is first materials. Second, it was recorded the only one family. Finally, it was omitted the parts of his brotherandsisters, children and servants who lived with their master. According to these demerits its worth of materials for history will be descended more or less. Therefore, when we use this material, we should treat it more considerably.